

# 예 산 총 칙

2018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18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157,728,852	4,731,866
일반회계	135,434,464	4,063,034
특별회계	22,294,388	668,832
기타특별회계	22,294,388	668,832
의료급여기금	284,577	8,537
주거환경개선사업	510,129	15,304
주차장	21,208,492	636,255
지하수관리	261,990	7,860
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	29,200	876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34,563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,4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.